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?

[시행 2024. 11. 1.] [통일부령 제133호, 2024. 11. 1., 일부개정]

통일부 (정착지원과) 02-2100-592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제1조의2(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제4항 및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 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・연장 요청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7. 30.]

[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<2024. 7. 30.>]

제1조의3(무연고청소년 보호)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"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"란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, 청소년,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. <개 정 2024. 7. 30.>

[본조신설 2022. 6. 21.]

[제1조의2에서 이동 <2024. 7. 30.>]

- 제2조(학력·자격 인정의 신청 등) ① 영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력인정·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7. 30.>
 -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<개정 2013. 3. 23.>
 -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. [전문개정 2010. 9. 27.]
- **제3조(직업훈련의 신청 등)**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0. 19., 2022. 2. 17., 2022. 6. 21.>
 -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·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1. 10. 19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- **제3조의2(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)**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7. 1.>
 - 1. 60세 이상인 사람
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11. 1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3조의3(취업 알선 등의 신청)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 · 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)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,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22., 2019. 7. 18.> [제3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<2019. 7. 18.>]
- 제3조의4(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)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 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8., 2022. 2. 17.>

[제3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3으로 이동 <2019. 7. 18.>]

- **제3조의5(창업 지원의 신청 등)**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2.]

[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<2021. 7. 2.>]

- 제3조의6(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)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 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 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본 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되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20., 2024. 11. 1.>
 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. [전문개정 2010. 9. 27.]

[제3조의5에서 이동 <2021. 7. 2.>]

- 제4조(주거지원)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3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8.>
 -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(이하 "주거지원금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. 다만,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 대주택(이하 "공공임대주택"이라 한다)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등 보호대상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있다.<개정 2019. 7. 18., 2021. 10. 19.>
 -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"나"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: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
 - 2.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"다"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: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
 -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 -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・임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 은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, 신청인이 확인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19. 7. 18.>
-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 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.<신설 2019. 7. 18.>
- 1.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
- 2.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・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
- 3.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
- 4.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
- 5.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
- 6.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
- 7.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
- 8.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
- 9.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
- 10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⑧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<신설 2019. 7. 18.>
- ⑨ 제7항 각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사유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<신설 2019. 7. 18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- 제5조(정착금의 지급방법)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,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 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- 제6조(가산금의 지급사유 등)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0., 2021. 7. 2., 2024. 11. 1.>
 - 1. 13세 미만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)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
 - 2.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
 - 3.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
 - 4.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 - 5.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
 -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)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0., 2021. 7. 2.>
 -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<신설 2019. 4. 10., 2021.

7. 2., 2024. 11. 1.>

- 1.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 - 가. 제1항제2호의 경우: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,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나. 제1항제3호의 경우: 진단서,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다. 제1항제4호의 경우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라. 제1항제5호의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
- 2.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) 사본 1부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- **제6조의2(장려금의 지급사유 등)** ① 영 제39조제7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 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4. 11. 28., 2021. 7. 2., 2024. 11. 1.>
 - 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 · 제2항,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·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
 - 2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1. 28.>
 -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통일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호대상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<신설 2024. 11. 1.>
 - ④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한다.<개정 2012. 6. 22., 2019. 4. 10., 2021. 7. 2., 2021. 10. 19., 2024. 11. 1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- 제6조의3(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・종료 및 재실시) ① 법 제22조의2제4항・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・제6항・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(재실시)기간 연장・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7. 30.]

제7조(거주지보호대장) ① 삭제 <2022. 2. 17.>

-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<개정 2022. 2. 17.>
- ③ 삭제<2014. 11. 28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[제목개정 2022. 2. 17.]

- 제7조의2(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)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. <개정 2021. 7. 2.>
 -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.<개정 2021. 7. 2.>

[본조신설 2010. 9. 27.]

제8조(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)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·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0., 2021. 7. 2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 [제목개정 2021. 7. 2.]

- 제8조의2(교육지원의 절차)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0., 2021. 7. 2., 2024. 11. 1.>
 - 1.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 - 2.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(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) 사본 1부
 - ② 삭제<2021. 7. 2.>
 -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0., 2021. 7. 2.>
 - 1.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, 휴학·복학 및 졸업·제적·자퇴 여부
 - 3. 유급(留級)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
 -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.<개정 2014. 11. 28., 2019. 4. 10., 2021. 7. 2.>
 -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・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・수업료 등을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.<개정 2014. 11. 28., 2019. 4. 10., 2024. 11. 1.>
 - 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 - 2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 - 3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
 - 4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
 -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· 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14. 11. 28., 2019. 4. 10.>
 - ⑦ 재단 이사장은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7. 2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제9조 삭제 <2009. 8. 5.>

제10조(생업 지원의 신청)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(이하 "편의사업허가등"이라 한다)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부칙 <제133호,2024. 11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가산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**제3조**(장려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